**소규모합병 공고**

주식회사 센트랄은 주식회사 센트랄엘티에스와 2018년 6월 2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 527조의3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 합병 당사회사

가. 존속법인: 주식회사 센트랄(본점 소재지 : 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551)  
나. 해산법인: 주식회사 센트랄엘티에스

(본점 소재지 : 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상촌길 307-106)

2. 합병 방법: 주식회사 센트랄이 주식회사 센트랄엘티에스를 흡수합병 함

3. 합병기일: 2018년 9월 1일

4. 소규모합병: 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 10%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 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.

5. 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 행사절차: 2018년 7월 12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 [별첨]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. 행사방법에 따라 제출

나. 제출기간: 2018년 7월 12일 ~ 7월 26일

다. 행사방법 및 장소

- 명부주주: 2018년 7월 26일까지 주식회사 센트랄 샤시경영팀에 제출

(전화번호: 055-278-0247)

라. 주식매수청구권: 상법 제527조의3 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
마. 상법 제527조의3 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 100분의 20 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

2018년 07월 12일

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551

주 식 회 사 센 트 랄

대 표 이 사 김 종 태

대 표 이 사 강 태 룡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[별첨]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   주식회사 센트랄 대표이사 귀하    본인은 귀사와 주식회사 센트랄엘티에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   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| 주 주 명 |  | | | | 소유주식의 종류 |  | 소유주식수 |  | 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8년 [  ] 월 [  ]일     |  |  | | --- | --- | | 성명: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(서명 또는 날인) | 주민등록번호: | | 주소: | | | 연락처: | | |